

<간이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2026.06.17.)

대신 퇴직연금 40 배당주 증권 자투자신탁[채권혼합]  
(펀드 코드:54811)

투자 위험 등급 4 등급 [보통 위험]						대신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b>실제 수익률 변동성</b> 을 감안하여 <b>4 등급</b> 으로 분류하였습니다.
1	2	3	4	5	6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b>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b> 이며, 집합투자재산의 <b>50% 이상</b> 을 국공채에 주로 투자하는 <b>채권모투자신탁</b> 에 투자하고, <b>국내 배당관련 주식</b> 에 주로 투자하는 <b>주식모투자신탁</b> 에 <b>40% 이하</b> 를 투자합니다. 주식과 채권 투자에 따른 <b>주식가격 변동 위험 및 이자율 변동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이 요약정보는 대신 퇴직연금 40 배당주 증권 자투자신탁[채권혼합]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 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모자형 구조의 자투자신탁으로, 국내 주식에 투자하여 투자대상주식의 가격 상승에 따른 수익을 추구하는 “대신 배당주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에 40% 이하 투자하여 자본소득을 추구하고, 국공채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대신 실버연금 국공채 증권 모투자신탁[채권]”에 50% 이상으로 투자하여 안정성을 추구합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모투자신탁명		주요투자전략							
분류	대신 배당주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 주식 60% 이상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우량주식, 가치주식 및 고배당 주식을 중심으로 장기투자하여 고수익을 추구							
	대신 실버연금 국공채 증권 모투자신탁[채권]		- 국공채 80% 이상 투자 - 국공채를 중심으로 중장기적 이자수익을 추구하는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구축합니다. 국공채의 범위 : 국채, 통안채, 정부보증채, 지방채, 정부투자기관채, 특수공공법인채(토지개발채, 산금채, 전력채, 예보채, 부실정리기금채, 증금채)							
투자비용	클래스 종류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총보수 및 비용(단위:%)				1,000 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단위:천원)			
	판매 수수료	총보수	판매보수	동종유형 총보수	총보수·비용	1년	2년	3년	5년	10년
	투자신탁	없음	0.800	0.53	-	0.8051	83	168	258	449
<p>(주 1) ‘1,000 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b>1,000 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보수·비용[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모투자펀드 보수·비용포함)]을 의미</b>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p> <p>(주 2) ‘<u>동종유형 총보수</u>’는 <u>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u>합니다.</p>										

투자실적추이 (연평균 수익률)	종류	최초설정일	최근 1년 25.06.18 ~ 26.06.17	최근 2년 24.06.18 ~ 26.06.17	최근 3년 23.06.18 ~ 26.06.17	최근 5년 21.06.18 ~ 26.06.17	설정일 이후			
	투자신탁(%)	2006-02-21	48.44	25.05	18.32	9.46	5.74			
	비교지수(%)	-	62.87	31.07	22.18	11.28	6.50			
	수익률 변동성(%)	2006-02-21	11.41	9.29	8.26	7.46	6.73			
	<p>(주 1) 비교지수 : <math>[(KOSPI + (CD \text{ 금리} \times 0.1))] \times 0.4 + [((KIS \text{ 국고채 } 2\sim 3 \text{ 년} \times 0.72) + (KIS \text{ 통안 } 1\sim 2 \text{ 년} \times 0.18) + (Call \times 0.1))] \times 0.6</math> (비교지수 성과에는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음)</p> <p>(주 2)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 총비용 지급후 해당기간동안의 세전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p> <p>(주 3)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p>									
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국내혼합채권형, 단위 : %)				운용 경력년수
				집합투자 기구 수 (개)	운용규모 (억원)	운용역		운용사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1년	최근 2년	
	최진혁	1983	책임	18	2,141	48.45	-			9년 11개월
진재식	1979	책임	11	8,707	-	-	24.10	17.84	11년 11개월	
이재형	1996	부책임	4	5,061	-	-			-	
<p>(주 1)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p> <p>(주 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p> <p>(주 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 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p> <p>(주 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p>										
투자자 유의사항	<p>· <b>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p> <p>· <b>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b></p> <p>·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p>·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p> <p>· <b>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b></p> <p>·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년)이 되는 날에 설정액 50억원 미만인 경우 소규모펀드로서 분산투자가</p>									

<p>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p>																	
<p>주요투자 위험</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투자위험의 주요내용</th> </tr> </thead> <tbody> <tr> <td>원본 손실위험</td> <td> <p>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p> </td> </tr> <tr> <td>이자율 변동위험</td> <td> <p>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가격 하락에 의한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자율 상승에 의한 채권가격 하락으로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td> </tr> <tr> <td>주식가격 변동위험</td> <td> <p>당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을 주식에 일정수준 이상으로 투자함으로써 주식시장의 가격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대상주식의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당해 투자신탁의 가치도 일정수준 하락하게 됩니다.</p> </td> </tr> <tr> <td>시장위험</td> <td> <p>신탁재산을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함으로써 이 투자신탁은 국내금융시장의 주가,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신탁재산의 운용에 있어 예상치 못한 정치·경제상황, 정부의 조치 및 세제의 변경 등은 당해 신탁재산의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p> </td> </tr> <tr> <td>신용위험</td> <td> <p>투자대상종목 발행 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 등으로 신용등급 하락 혹은 부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편입한 채권 등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등급 변동은 없을지라도 신용스프레드 확대 등으로 인해 가치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시장 전체적으로 신용위험에 대해 민감하게 될 경우 개별 종목의 신용위험 변동과는 별개로 신탁재산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p> </td> </tr> <tr> <td>파생상품 레버리지위험</td> <td> <p>주식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레버리지 효과(지렛대 효과)로 인하여 파생상품 그 자체에 투자되는 금액보다도 상당히 더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p> </td> </tr> <tr> <td>집합투자기구 해지 위험</td> <td> <p>투자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집합투자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투자신탁이 설정한 후 1년(법시행령제81조제3항의 제1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년) 경과시점에서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이거나 설정하고 1년(법시행령제81조제3항의제1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의 동의 없이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p> </td> </tr> </tbody> </table>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원본 손실위험	<p>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p>	이자율 변동위험	<p>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가격 하락에 의한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자율 상승에 의한 채권가격 하락으로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주식가격 변동위험	<p>당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을 주식에 일정수준 이상으로 투자함으로써 주식시장의 가격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대상주식의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당해 투자신탁의 가치도 일정수준 하락하게 됩니다.</p>	시장위험	<p>신탁재산을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함으로써 이 투자신탁은 국내금융시장의 주가,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신탁재산의 운용에 있어 예상치 못한 정치·경제상황, 정부의 조치 및 세제의 변경 등은 당해 신탁재산의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p>	신용위험	<p>투자대상종목 발행 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 등으로 신용등급 하락 혹은 부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편입한 채권 등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등급 변동은 없을지라도 신용스프레드 확대 등으로 인해 가치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시장 전체적으로 신용위험에 대해 민감하게 될 경우 개별 종목의 신용위험 변동과는 별개로 신탁재산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p>	파생상품 레버리지위험	<p>주식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레버리지 효과(지렛대 효과)로 인하여 파생상품 그 자체에 투자되는 금액보다도 상당히 더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p>	집합투자기구 해지 위험	<p>투자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집합투자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투자신탁이 설정한 후 1년(법시행령제81조제3항의 제1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년) 경과시점에서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이거나 설정하고 1년(법시행령제81조제3항의제1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의 동의 없이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p>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원본 손실위험	<p>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p>															
	이자율 변동위험	<p>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가격 하락에 의한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자율 상승에 의한 채권가격 하락으로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주식가격 변동위험	<p>당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을 주식에 일정수준 이상으로 투자함으로써 주식시장의 가격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대상주식의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당해 투자신탁의 가치도 일정수준 하락하게 됩니다.</p>															
	시장위험	<p>신탁재산을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함으로써 이 투자신탁은 국내금융시장의 주가,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신탁재산의 운용에 있어 예상치 못한 정치·경제상황, 정부의 조치 및 세제의 변경 등은 당해 신탁재산의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p>															
	신용위험	<p>투자대상종목 발행 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 등으로 신용등급 하락 혹은 부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편입한 채권 등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등급 변동은 없을지라도 신용스프레드 확대 등으로 인해 가치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시장 전체적으로 신용위험에 대해 민감하게 될 경우 개별 종목의 신용위험 변동과는 별개로 신탁재산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p>															
	파생상품 레버리지위험	<p>주식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레버리지 효과(지렛대 효과)로 인하여 파생상품 그 자체에 투자되는 금액보다도 상당히 더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p>															
집합투자기구 해지 위험	<p>투자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집합투자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투자신탁이 설정한 후 1년(법시행령제81조제3항의 제1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년) 경과시점에서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이거나 설정하고 1년(법시행령제81조제3항의제1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의 동의 없이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p>																
<p>매입 방법</p>	<table border="1"> <tbody> <tr> <td> <p>· 오후 3시 30 분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2 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p> <p>· 오후 3시 30 분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3 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p> </td> <td> <p>환매 방법</p> </td> <td> <p>· 오후 3시 30 분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3 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4 영업일(D+3)에 관련 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p> <p>· 오후 3시 30 분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4 영업일</p> </td> </tr> </tbody> </table>	<p>· 오후 3시 30 분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2 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p> <p>· 오후 3시 30 분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3 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p>	<p>환매 방법</p>	<p>· 오후 3시 30 분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3 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4 영업일(D+3)에 관련 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p> <p>· 오후 3시 30 분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4 영업일</p>													
<p>· 오후 3시 30 분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2 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p> <p>· 오후 3시 30 분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3 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p>	<p>환매 방법</p>	<p>· 오후 3시 30 분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3 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4 영업일(D+3)에 관련 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p> <p>· 오후 3시 30 분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4 영업일</p>															

환매 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5 영업일(D+4)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기준가	산정방법	- 당일 기준가격 = (전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전일 집합투자기구 총좌수 - 1,000 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공시장소	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 ( <a href="http://asset.daishin.com">asset.daishin.com</a> )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 <a href="http://dis.kofia.or.kr">dis.kofia.or.kr</a> )에 게시합니다.	
과세	구분	과세의 주요내용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b>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b> 입니다.	
	수익자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b>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b> 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p>✓ 퇴직연금계좌의 세제 :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 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p> <p>※ 연금저축계좌 및 퇴직연금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이 투자신탁은 퇴직연금제도 가입자를 위한 투자신탁으로서 과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전환절차 및 방법	해당사항 없음		
집합투자업자	대신자산운용(주) (대표번호: 02-769-3449 / 인터넷 홈페이지 : <a href="http://asset.daishin.com">asset.daishin.com</a> )		
모집기간	효력발생 이후 계속 모집 가능	모집·매출 총액	10 조좌(1 좌=1 원)
효력발생일	2026년 7월 2일	존속 기간	정해진 신탁계약 기간은 없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a href="http://asset.daishin.com">asset.daishin.com</a> ), 한국금융투자협회( <a href="http://dis.kofia.or.kr">dis.kofia.or.kr</a> ) 인터넷홈페이지 참고		
참조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및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해당사항없음		

##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http://dart.fss.or.kr))
- 투자설명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http://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kofia.or.kr](http://kofia.or.kr)), 집합투자업자([asset.daishin.com](http://asset.daishin.com))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http://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http://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http://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asset.daishin.com](http://asset.daishin.com))
- 수시공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http://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asset.daishin.com](http://asset.daishin.com))